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돋는
국민건강보험



ハングル版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의료보험입니다.

이러한 분이 가입 대상입니다.

- 점포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 농업이나 어업을 영위하는 분
- 파트 타임, 일용직 등을 하며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
- 퇴직하여 직장 건강 보험을 상실한 분
-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것을 인정 받은 외국인



왜 필요하
나요?



누구나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 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 10~30%의 본인 부담액을 지불하고 누구나 안심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하여 가입자 모두가 공평하게 돈을 내어 필요한 의료비 등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건강보험 등을 상실하고 14일 이내입니다.

회사 등을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가서 가입 신고를 하면 회사를 퇴직한 시점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5월에 퇴직하고 8월까지 신고를 잊고 있었을 경우
보험료(세)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을 취득한 5월까지 소급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만,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가입 신고를 한 때 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 퇴직

가입신고

5월

6월

7월

8월

보험료(세)는 5월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의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합시다.

보험료(세)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세)를 체납하면 통상보다 보험증의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비가 일단 전액 본인부담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보험료(세)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신청에 의해 감액이나 면제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도 가능하므로 체납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담당창구로 신속히 문의하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상황 예시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다른 시구정촌에서 전입한 경우	다른 시구정촌의 전출증명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탈퇴(상실)한 경우	직장 건강보험 상실 증명서
	직장건강보험 등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이유 증명서
	자녀가 생겼을 때	보험증, 모자건강수첩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보호폐지결정통지서
	외국인이 1년 이상의 체재를 인정받은 경우	외국인 등록증명서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경우	다른 시구정촌으로 전출할 경우	보험증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직장 건강보험 등 쌍방 보험증
	직장 건강보험 등 피부양자가 된 경우	(후자가 미교부 상태인 경우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증,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활보호대상이 된 경우	보험증, 보호개시결정통지서
기 타	외국인으로 가입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보험증, 외국인등록증명서
	퇴직자 의료제도대상이 된 경우	보험증, 연금증명서
	같은 시구정촌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증
	세대주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세대 분가나 합가 된 경우	
	해외근무나 장기출장의 경우	
	학업을 위해 다른 주소로 이전한 경우	보험증, 재학증명서
	보험증을 분실했을 때 (혹은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할 수 없게 된 보험증 등)

문 의 제

시구정촌 사무소 국민건강보험 담당과
혹은 연건강복지부 의무국보과

TEL 052-961-2111 내선 3181, 3182 (직통) 052-954-6277

